



휴업 급여



Workers'
Compensation
Board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금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 급여라고 합니다.

보상 급여

직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하십시오. 또한 뉴욕주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위원회)에 *Employee Claim(근로자 청구서)(Form C-3)*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위원회의 웹사이트(wcb.ny.gov)에 있습니다.

역일 기준 8-14일간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손실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일 기준 14일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첫 날부터 손실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업한 첫 7일(역일 기준)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휴업 급여 계산

비과세 대상인 휴업 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날짜 이전의 52주간 주급 평균(Average Weekly Wage, AWW)과 장애 정도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AWW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초과 근무 수당과 기타의 보상을 포함한 총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장애 정도는 장애를 입은 정도의 백분율입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위원회는 AWW의 3분의 2를 사용하여 계산한 다음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AWW가 \$900이고 장애 정도가 50%인 경우, 급여는 주당 \$300입니다($2/3 \times \$900 = \600 , $\$600 \times 50\% = \300).

주당 급여 상한 및 하한

장해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급여 액수는 동일합니다. 산재 보상 휴업 급여는 주당 금액 상한이 적용되는데,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상한이 변경되더라도 주당 급여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당 급여 상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주 전체의 평균 주급을 기준으로 하며,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결정합니다. 산재 보상 상한은 뉴욕주 평균 주급의 3분의 2입니다.

wcb.ny.gov에 방문하여 검색창에 “maximum weekly benefit(주당 급여 상한)” 또는 “minimum weekly benefit(주당 급여 하한)”를 입력하여, 현행 주당 급여 상한 및 하한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험회사에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할 때까지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장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하여 위원회에 문의해주시요.

장해 분류

귀하의 장해는 다음의 분류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참고: 모든 부상은 나중에 'permanent(영구 장해)'로 확인되더라도 처음에는 'temporary(한시 장해)'입니다.

- **한시적 전면 장해:** 근로 능력과 소득 창출 능력 전부를 한시적으로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허용되는 휴업급여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시적 부분 장해:** 근로 능력과 소득 창출 능력 일부를 한시적으로 상태를 말합니다. 급여는 장해 비율과 동일합니다.
- **영구적 부분 장해(Non-schedule Loss):** 근로 능력을 일부 잃은 상태입니다. 손실 임금에 대해 최대 10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급여가 소진된 지 1년 이내이고 소득 능력의 75% 이상을 상실하여 극심한 곤경에 처한 경우 평생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가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치료는 평생 혜택입니다.
- **영구적 부분 장해(Schedule Loss):** 팔, 손, 손가락 또는 다리, 발, 발가락 사용, 또는 시력이나 청력의 일부를 잃은 상태입니다. 영구적 부분 장해의 급여 지급 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영구적 전면 장해:** 근로 능력과 소득 창출 능력 전부를 영구적으로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급여는 평생 지급됩니다.
- **외모 손상:** 안면부, 두부, 또는 경부에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20,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된 보상 금액의 20%의 연체료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청구 건에 대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위원회 위원이 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한, 또는 지시할 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 급여 지급 동안: 보상금 정기 지급은 만기일 2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의 연체료와 \$300의 추가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구 합의

근로자와 보험회사는 일시불 지급 또는 연금을 받기로 하고 청구를 영구적으로 종결짓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Settling the Claim with a Section 32 Waiver(섹션 32 면제 합의에 따른 청구 합의)**라고 합니다. 이 합의에서 근로자는 당일 지급받는 것으로 장래의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본인에게 옳은 결정인 경우에 근로자 본인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cb.ny.gov를 방문하거나 위원회의 **유튜브 페이지**에서 "Settling Your Claim(청구 합의)" 정보 제공 동영상 시청하십시오.

감액 소득 급여

근로 복귀를 할 수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 소득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러한 급여는 부상 이전의 임금과 부상 후 임금간의 차액의 최대 3분의 2을 지급합니다.

유족 급여

근로자가 부상 직후에 사망하든, 추후에 사망하든 상관없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급 최대 한도까지 근로자의 평균 주급의 3분의 2를 함께 받습니다. 자녀는 18세까지 또는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23세까지 유족 급여를 받습니다. 시각 장애인이거나 신체 장애인 자녀는 평생 유족 급여를 받습니다. 배우자는 평생 또는 재혼할 때까지 유족 급여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2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부모가 \$50,000를 지급 받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똑같이 금액을 나누어 받습니다. 상기 열거된 유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관리인이 \$50,000를 지급 받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최대 \$12,500, 그 외 모든 카운티에서는 최대 \$10,500까지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사망 보험금 청구하기에 관한 정보는 wcb.ny.gov/fatalitybenefit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보장 장해 보험

영구적 장해 또는 최소 12개월 지속되는 장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회보장 장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십시오. 위원회는 사회보장 장해 보험 절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 지원

위원회는 문서를 귀하가 필요로 하는 언어로 번역해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심리를 위해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번역이나 통역 준비를 위해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 온라인 심리를 이용 중이시면, 체크인 과정에서도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